

# 파주시설게자문위원회조례 개정

|          |     |
|----------|-----|
| 의안<br>번호 | 559 |
|----------|-----|

제출년월일 : 2000. 5. 8.

제출 일 : 파 주 시 장

## ☐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99.10.30일 (대통령령 제16591호) 개정공포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

(안제1조, 안제3조의 제1호·제2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 및 제39조의 삭제

나. 잘못 표기된 법률의 명칭을 바르게 수정 (안제3조 제3호·제4호)

“국가계약법시행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다. 설계등 자문대상공사의 범위중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일정 규모이상 증액되는 공사뿐만아니라 감액되는 공사도 포함되도록함. (안제6조 제4호)

##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8조의7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3조중 제1호·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내지 제7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1호·제2호(중전 제3호·제4호)중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건설기술관리법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예외로 하는 건설공사는 제외)”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대상인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중 “증액되는”을 “증감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 과. 소 |         | 건 설 과 ☎940-4431 |
|------------|---------|-----------------|
| 입안자        | 건 설 과 장 | 김 영 구           |
|            | 도로건설담당  | 김 홍 식           |
|            | 담 당 자   | 전 재 식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의7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 . . 제21조제1항의 . . . . .                     |
| 제3조(위원회기능) 설계자문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 제3조(위원회기능) . . . . .                                     |
| 1.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설계자문                                                              | ( 삭 제 ) . . . . .                                        |
| 2.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2항단서 조항에 따라 설계심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 ( 삭 제 ) . . . . .                                        |
| 3.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                                          |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
| 4.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시공입찰 공사의 설계 적격심의                                                                   |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
| 5. (생 략)                                                                                                        | 3. (현행제5호와 같음)                                           |
| 6. (생 략)                                                                                                        | 4. (현행제6호와 같음)                                           |
| 7. (생 략)                                                                                                        | 5. (현행제7호와 같음)                                           |
|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①위원회의 설계등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대상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 제6조(설계등자문대상공사)① . . . . .                                |
| 1.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로 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 1. . . . .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기술심의대상인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 4.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 규모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 4. . . . . 증감되는 . . . . .                                |